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윤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7월 19일

발 의 자 : 이윤희·진두생·문종철·김창수·
유 용·김광수(도봉)·유광상·
김희걸·맹진영·성백진·송재형·
김기대·오경환·박성숙·최영수·
김동율·김선갑·서영진 의원
(18명)

1. 제안이유

음수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, 경미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감면액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은 용역 또는 자체적으로 음수대를 관리하고 있음.

한편 자체 관리보다는 용역을 통한 관리 시 지적률이 더 낮게 나오고 있고 상당수 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없이 음수대 유지관리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음수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음수대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(안 제9조제5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
- 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 협의
- 다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(이하 “수도조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관리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,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수도조례」 (이하 “수도조례”라 한다) --- ----- -----.</p> <p>⑤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
<p><신 설></p>	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5항에서 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”라고 규정한 바, 수도요금 감면대상 제외에 따른 환수 수입이 발생하고 감면제외 대상에 대한 상수도 본부의 음수대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,
- 순비용추계결과 순수입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이 윤 희 의원